

② 전업주부 3명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

여 94. 11. 4

주부는 피해보상에서도 하한선

일당 1만원 정도로 계산, 여고생 배상액의 절반도 안돼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사고대책본부와 유족대표 사이의 손해배상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공전되는 가운데 주부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1차 보상협의회에서 쌍방이 유족배상금은 국가배상법 또는 법원판례(민법 적용) 중 유족측에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마찰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에는 사망자의 경우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현재의 나이와 직업에 따른 일일수익 총계와 개인별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장례비, 특별위로금

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호프만식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이번 사고로 사망한 무학여고 2학년생의 경우 8천4백만원(특별위로금과 장례비 제외)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 피해자 중 5명에 달하는 주부 가운데 취업여성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전업주부는 이번에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를 일용노동자의 일당과 취업가능일수 25일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주부의 각종 산업재해나 일상적인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숙재(이화여대 가정관리

학과)교수의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면, 35세의 주부가 사망했을 때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 호프만식 사망보험금은 3천2백60여만원. 여기에는 전업주부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으로 간주되는 일용노동임단가 26만6천2백50원이 보험금을 좌우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주관적인 산정비



▲서울시청에서 열린 유가족과 시관계자의 보상협의.

용은 차치하고 대체비용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저 42만여원에 서 53만 원 정도가 된

다. 이는 실제로 주어져야

할 배상액의 40-50%에 머물러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교수는 "국가배상의 경우 산재보상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보는 관점이나 적용기준은 같다"고 말하고 "그때그때 화폐로 산출되는,

보이는 노동에 비해 가사노동의 경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용임금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개선과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정미 기자)